

## 변경 합의서

본 변경 합의서는 2022년 9월 2일에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("위탁자")와 삼성에스일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("자산관리자") 사이에 체결된 자산관리위탁계약서의 제10조(수수료) 및 별지와 관련하여 위탁자와 자산관리자는 별지의 제1조 매입수수료 (1)의 내용에 대해 < 아래 >와 같이 변경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.

< 아래 >

### 제1조 매입수수료

(1) 계약기간 동안 위탁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매입수수료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[매입수수료 = 매입가액 × 영점오퍼센트(0.5%) (부가가치세 별도)]

- 매입가액은 투자대상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가
- 매매대가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(부가가치세를 제외함)으로 규정된 총금액(투자대상자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승계한 임대보증금 등 부채와 투자대상자산의 수익과 비용의 정산과 관련한 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)으로 함

※ 단,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22년 11월 매입 예정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소재 대치타워, 서울시 중구 순화동 175 소재 에스원빌딩의 매입에 한해 매입수수료는 매입가액의 영점일퍼센트(0.1%, 부가가치세 별도)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한다.

2022년 11월 18일

### 위탁자 :

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, 16층(서초동, 삼성생명서초타워)  
대표이사 윤 양 수



### 자산관리자 :

삼성에스일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, 16층(서초동, 삼성생명서초타워)  
대표이사 김 정 근

